

都 市 課

郡政質問答辯資料

都市課長 신대영 (印)



質問日字		質問議員	홍재룡 의원
質問 內容 要 略	○ 읍. 면별 5 ~ 6만의 전원도시 개발계획의 실체		
	答辯日字	答辯者	도시과장 신대영
答 辯 內 容	<p>○ 우리군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읍급인 회천읍 1개소와 면급 도시계획구역은 남면, 광적면, 백석면 도시계획구역으로 4개지역 총 14.7Km² 를 관리하고 있으며</p> <p>○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취락)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회천읍 덕계, 회정 2개지구, 주내면 산북. 고읍 2개지구, 은현면 선암. 봉암 2개지구, 남면 상수 지구등 총 7개지구 2.94Km²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p> <p>○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읍. 면별로 5~6만명 인구의 전원도시 개발 계획의 실체는 전무한 실정이며 다만 우리군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96년도에 양주군 장기 발전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읍. 면별로 지구특성을 살려 살기좋은 전원도시를 개발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p> <p>- 우선 전원도시 개발계획은 기존도시와 연계하여 자족할 수있는 기능을 보유한 도시중심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을 꾀하고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흡수하여 도시와 농촌의 기능을 적절히 조화되도록 권역별 기능분담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천.주내권", "광적.백석.장흥권", "남면.은현권역"으로 크게 3개권역으로 개발계획을 구상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p>		

<p>답</p>	<p>- 첫째, 회천.주내권역으로 향후 군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양주군의 행정, 업무, 관리기능중심지와 고속도로, 간선도로망 및 경원선 복선, 전철화 계획등과 연계한 주변 광역교통의 상호연결지와 덕정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양주군의 유통, 상업기능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서울, 의정부등 인접시에서 유출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기존시가지와 연계하여 회정리 주변에 전원적인 쾌적한 신시가지 건설 추진계획과 직업, 주택 근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공해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생활환경 및 복지차원에서 종합, 의료시설건립 및 다기능복지회관등을 건립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개발토록 유도하겠으며</p>
<p>辯</p>	<p>- 둘째, 광적.백석.장흥면 개발계획 구상은 광적.백석의 통합된 도시개발로 자족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주변에 산재된 공해공장 및 취락의 정비로 개발과 보전의 상충성을 조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전원적 주거공간 조성과 북한산 국립공원과 장흥국민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레저시설개발, 짜임새있는 개발과 특히 기존 시가지 및 가남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개발로 전통과 첨단이 조화된 선진농촌건설과 양주군 군민의 체육 및 문화공간과 주거공간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원도시로 육성.발전시킬 계획입니다.</p>
<p>內 容</p>	<p>- 세째, 남면, 은현권 개발계획구상은 회천, 광적과 버금가는 쾌적한 전원도시개발 및 노인복지 관련시설을 조상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만남의 장소.공간은 물론, 경관이 수려한 자연공간을 최대한 고려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 기존시가지 정비와 병행하여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를 대상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실시, 인구유입은 물론, 직장, 주거근접으로 거주 개념을 도입, 신도시 차원이 아닌 인구 3만의 전원도시 개발계획을 착실히 수행, 살기 좋은 양주, 복지 양주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코자 하오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p>

郡 政 質 問 答 辯 資 料

都市課長

申 大 榮 (印)

質問日字	質問議員	홍 재룡 의원
質 問 內 容 要 約	<p>광역 상수도 계획 시행</p> <p><input type="checkbox"/> 팔당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의 물량 배정조정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임진강 광역상수도계획의 제고의향</p> <p><input type="checkbox"/> 남면상수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	
	答辯日字	答辯者
答 辯 內 容	<p><input type="checkbox"/> 팔당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의 물량 배정조정 계획</p> <p>-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에 따른 물량배정은 총 17천톤/일(회천읍 9천톤/일 주내면 5천톤/일, 장흥면 3천톤/일)으로 배정계획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중에 있으며,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에 따른 배정물량은 6천톤/일로서 '99년 부터 시행예정이며, 이에 따른 배정물량은 건설부교통부의 수도권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기본 계획 수립시 확정되어 수정이 불가하며, 양주군 전지역을 급수구역으로 지정 광역화하고자 광역상수도 5,6단계 물량배정 외에 임진강 광역상수도 기본 계획수립에 따른 물량배정시 적극 검토 추진코져합니다.</p>	

□ 임진강 광역상수도의 제고 의향

수도권 광역 상수도 5,6단계 용수배분량 및 팔당수원의 한정으로 건설부에서 경기북부지역(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의 상수도 급수량 확보책으로 임진강 광역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어 우리군에서는 회천읍, 남면, 은현면, 광적면, 백석면 지역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건설부와 협의하여 임진강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설계시에 용수량 배분이 최대한(1일 20,000톤~30,000톤)배정될수 있도록 추진코져합니다.

㉔ 남면상수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점 : 남면상수원 보호구역내(면적 : 564,716㎡, 64 세대, 175 명)주민들의 각종 규제에 의한 불편으로 인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요구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현재 남면 상수도의 시설용량은 1일 1천톤이나 지역발전으로 인한 급수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에 따른 수도물사용의 증가로 시설확장이 요구되고 있어 시설용량을 1일 2천톤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확장(방사성집수정개발-1천톤/일)코져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나 지역주민의 불편을 고려, 심정으로 대체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상수원 보호

郡政質問答辯資料

都市課長 新大영 (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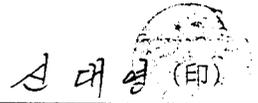
質問日字	質問議員	김광배 의원
質問内容要略	<p>○ 백석면 복지 2리내 흥복저수지에 대한 시설확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저수지)로 결정입안하고자 의정부시로부터 협의요청한 사안에 대한 대책</p>	
答辯	答辯日字	答辯者 도시과장 신대영
辯 容 內 容	<p>○ 흥복저수지는 행정구역상 우리군 백석면 복지2리 526-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에서 1968년에 댐을 완공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정부 일부시민에게 급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댐의 노후화로 댐체에 누수현상과 취수수조물의 기초연결부 불안 등 위험이 내재되고 갈수기의 용량부족으로 정상적인 상수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의정부시에서는 댐의 구조적 안정측면을 고려하여 댐체를 보강하고 승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는 1일 5,000톤의 원수를 생산하고 있으나, 갈수기에는 상수원 확보가 곤란하여 년 4개월 정도 생산이 가능하며 시설물 확장시는 기존댐 높이가 20m에서 26미터로 상승하여 장마기에 상수원을 확보, 년중 1일 6,000톤의 원수를 확보하여 의정부 일부시민에게 급수를 공급코자 수도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p> <p>○ 도시계획법 제 1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95. 4.20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입안권 협의 요청이 있어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생계유지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제한행위와 상수원보호구역확장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 우려를 감안, 동시설물의 확장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으며 의정부시민의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서는 팔당상수원을 확보하는 팔당상수원 광역 5단계사업을 추진하여 의정부시민의 안정적인 급수공급과 우리군민의 오랜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토 회신한바 있습니다</p>	

그러나 입안권협회가 성립되지 않는 실정에서 95. 8. 24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 11조 및 동법 제 12조, 제 1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저수지)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전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우리군에 통보가 있어

- 우리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와 주민의 의견을 의정부시에 도시계획시설(수도:저수지)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및 우리군의 의견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물론 시설확장을 전면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 첫째, 도시계획시설입안권협회의요청시 상수원확장사업에 따른 우리군의 의견은 우리지역주민의 오랜 생활불편과 경제적, 정신적 피해등을 감안하고 의정부시민의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하여 팔당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을뿐아니라 입안권 협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한바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는 유보조치 하여야 하며
 - 둘째, 흥북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내 흥북지역주민 24세대 (현거주자)가 조상 대대로 오직 농업을 오늘날까지 생계를 유지하며 상수도수질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제한으로 그간 28년간을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곳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영세농가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으나, 각종 불이익에 대한 피해보상은 커녕 이곳 주민 약 10세대는 정든 고향을 멀리하고 타지역으로 전전하며 이주하였을뿐아니라 현재 남은 주민 24세대도 의정부 일부 극소수 시민을 위하여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인간의 기본생활권을 일방적으로 침해당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때, 우리군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군 9만 군민 모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물론 상수원확장공사를 전면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어
 - 95.9.5개최된 의정부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치 못하고 유산된 바 있으며 따라서 우리군은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의사가 관철될때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할것이며 보다 확고한 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관계부서에 이미 관련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군 의회에서도 보다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郡政質問答辯資料

都市課長



質問日字		質問議員	김 광배 의원
質問 内 容 要 約	<input type="checkbox"/> 광·백상수원 관리에 따른 시설보수및 지선 확장 방안		
答 辯 内 容	答辯日字	答辯者	
<input type="checkbox"/> 광·백상수원 현황 광백상수도 시설현황은 저수용량 120만톤의 취수댐(폭 7.5m,길이 220m 높이 34.7m)과 정수시설(착수정1지, 침전지 2지, 여과지 3지, 여과조절지 3지 정수지 2지)로 되어 있으며 배수지용량은 일일4,500톤으로 현재 일일 약 3,000톤을 지역 주민에게 급수 공급 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시설보수 방안 수원공의 시설하자 부분인 여수토 이음부 누수및 취수탑 취수공 작동 불능,산마루측구 토사유실 외 3건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인 (주) 태영에 대하여 하자보			

郡政質問答辯資料

都市課長 신대영 (印)

質問日字		質問議員	이흥규 의원
質問内容要略	도시계획 지구 및 취락지역 사업중 ○ 고시한후 장기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 ○ 회천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현황과 도로 및 가로망정비사업에 따른 미해결분의 보상대책 ○ 회천읍 덕계리 취락지역내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答辯日字	答辯者	도시과장 신대영
答	○ 고시후 장기 미집행 사업내역		
	시설별	시설결정	사업시행완료
	계	228건 1,218,542m ²	42건 267,816m ²
	도 로	208건 829,042m ²	166건 561,226m ²
	광 장	6건 27,200m ²	6건 27,200m ²
辯	공 원	14건 362,300m ²	14건 362,300m ²
內 容	○ 대책 및 향후계획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후 2년이내에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 사유재산권침해를 해소하고 있으나, 토지가격상승으로 용지보상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균의재정능력을 감안, 기간내 집행실현이 가능한 사업으로 도시의 기존 교통축을 보완할 수있는 도시계획도로나 교통량과다로 기존도로의 개설.확장이 시급하고 사업시행시 교통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 1단계사업으로 선정, 3년이내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외지역을 2단계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함		

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향후 도시계획을 변경(재정비)시에 무리한 개발계획을 지향하고 도시현황과 특성, 관련계획의 내용, 주민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도시의 향후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시행의 조기실현 가능성을 검토, 신중히 결정고시코자 하며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여건변화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불가능할 경우 과감히 해제 및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없도록 하고자합니다.
辯	<p>○ 회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도로와 가로망정비사업 보상 미해결분의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구간은 덕정국교앞외 3개구간 연장 890m 폭 6~10m이며 총사업비는 32억원으로 이중 보상비는 25억3천7백만원, 공사비는 6억 6천3백만원으로서 93.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3.9월부터 보상을 실시, 보상율이 80%가 상회하여 94.9.8 착공, 현재 하수관매설 및 토공작업이 완료되었으며 95. 12. 8일 준공예정입니다. - 도로와 가로망정비사업 보상은 총 215건의(토지 133건, 지장물 82건) 보상대상중 155건이 완료되었으며 미보상 60건(토지 31건, 지장물 29건)에 대해서는 개별방문하여 협의한바 보상가격저렴과 개인요구사항을 주장하며 협의를 지연하고 있는바, 3건에 대해서는 수용절차이행중이며 다른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촉구로 조속협의를코자 합니다.
內	<p>○ 회천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천읍지역의 오수 및 우수처리문제는 당면한 시급사업으로서 우기시 상승 침수지역 및 사업효과가 큰지역등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 1차로 덕산주택 주변공사로 단지내 508m를 사업비 2억원으로 94.10월 착공하여 95. 6월 준공완료하였으며 - 2차로 명성아파트에서 신성통상지역 하수처리를 위하여 덕산주택하수도와 연계하여 BOX공(2m*2.5m) 206m를 공사비 2억 3백만원으로 95.6월 착공하여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 본구간에서 청담천까지의 잔여구간 300미터도 추진하여야 하며, 소요 사업비가 3억이오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원을 당부드리오며 읍내 타지역 하수도사업도 우선순위와 예산허용범위내에서 조속 시행코자 합니다.
容	

郡政質問答辯資料

都市課長 **시 대명** (印)

質問日字		質問議員	이 상원 의원
質問 内容 要約	<input type="checkbox"/>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 계획및 실적 <input type="checkbox"/> 회천읍 지역 제한급수 대책		
答 辯 内 容	答辯日字	答辯者	
	<input type="checkbox"/>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계획및 실적 <input type="radio"/>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사업 현황 -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시설용량 일일17천톤을 팔당으로부터 공급받아 회천읍,주내면,장흥면지역에 급수코저하며 사업량은 총 송·배수관로 69km, 배수지및 가압장4개소등을 사업비 148억원을 투자 '94.3~'97.12 을 완공목표로 사업 시공중에 있습니다. <input type="radio"/>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사업 추진실적 -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시행에 앞서 기본및 실시설계를 '95.4월에 완공하		

<p>답</p>	<p>였으며 5단계 사업 통합정수장 설치에대하여는 의정부 계통에 해당하는 시군 (양주,의정부,고양,남양주)이 공동투자하여 수자원 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우리군 부담액에 4,807백만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토특자금을 전액 용자하여 시행코저하고 '94년도 부담액 127백만원을 기 납부하였고, 현재 '95년도 송·배수관로 시설공사 19km를 '95.9.13일부터 평화로변에 착공시행중에 있습니다.</p>
<p>辯 內</p>	<p>○ 향후 추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도에는 송배수관로 40km(사업공정 85%),배수지및 가압장2개소(사업공정50%) .토지매입등을 추진코저하며 - '97년도에는 송배수관로 10km(사업공정 100%),배수지및가압장2개소(사업공정100%)등을 연말까지 완공하여 '98년 이후부터 통수가 가능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p>容</p>	<p>○ 회천읍 제한급수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p>회천읍 급수지역은 생활수준향상및 급격한 도시화로 급수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동두천 수수물량의 부족으로 고지대및 관말지역의 주민들의 식수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p>

답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동두천시에 행정협약에 의한 정량공급을 지속요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조정요구 한바 있습니다.

답

아울러 부족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통수전까지 회천읍 상수도 사용량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백상수도 여유물량(1일 1천톤)을 금년도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공사시 (국도3호선)기존 배수관로(덕계지역)와 연결, 시공하여 송배수관로가 완료되는 데로 덕계리 일부지역에 할애급수 할수있도록 조치하여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內

容

郡 政 質 問 答 辯 資 料

都市課長 **신대영** (印)

質問日字	質問議員	이 상원 의원
質問 內 容 要 約	<input type="checkbox"/> 회천읍 상수도 보완대책으로 실시한 집수정 3공의 현사용 실태	
	答辯日字	答辯者
答 辯 內 容	<p> 二 회천읍 상수도는 동두천시와의 행정협약에 의하여 '87년부터 정수를 1일 9천톤을 수수받아 회천읍 덕정, 덕계, 회정지역등의 급수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왔으나 동두천시의 급격한 급수수요의 증가로 인한 부족공급(1일 약6~7천톤) 및 관내 수돗물 사용량의 급증으로 수돗물이 부족하게 공급되어 주민불편을 해소코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완료전인 '97년말까지 수원을 대처함을 목표로 보조수원 공3공(방사성 집수정)개발공사를 회천읍 회정리 지역에 준공(92.2.1)하여, 1일 2-3천톤의 물량을 고지대 및 관말지역주민에게 공급 하였으나, 현재 보조수원1,2,3호정은 인근농가의 농업용 관정개발과 인근농가의 농업용수 </p>	

부족에 따른 농업용수 지원 및 계속되는 취수와 장기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용수로의 충분한 공급이 어려웠으며 현재 보조수원 1,2,3호정에서 1일 1,000-1,500톤의 물량을 취수하여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답

辯

內

容

郡政 質 問 答 辯 資 料

都市課長 신대영 (印)

質問日字		質問議員	이상원 의원																																																			
質問 內容 要 略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 차집관로 설치공사 추진현황 및 개수공사와의 연계성 여부																																																					
	答 辯	答 辯 者	도시과장 신대영																																																			
	<p>○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우리군 및 동두천시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차집관로를 설치, 종말처리장에서 정화토록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과 수질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동두천시와 함께 추진중인 사업으로</p> <p>○ 동두천시 상봉암동 17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77,800㎡ 에 종말처리장 (처리용량 47,000톤/일)을 기설치하였으나 처리능력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어 확장중이며 우리군 관내 신천, 청담천, 효촌천, 덕계천에 차집관로를 설치, 동두천 종말처리장에 연결코자 사업추진중입니다. (단위: Km)</p>																																																					
內 容	答 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하천명</th> <th rowspan="2">총연장</th> <th rowspan="2">기완료</th> <th rowspan="2">95미발주</th> <th colspan="3">95계획</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연 장</th> <th>기시공</th> <th>미시공</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28.3</td> <td>8.4</td> <td>7.6</td> <td>12.3</td> <td>2.0</td> <td>10.33</td> <td></td> </tr> <tr> <td>신 천</td> <td>17.3</td> <td>0.2</td> <td>7.6</td> <td>9.5</td> <td>2.0</td> <td>7.5</td> <td></td> </tr> <tr> <td>청담천</td> <td>8.2</td> <td>5.6</td> <td>-</td> <td>2.6</td> <td>-</td> <td>2.6</td> <td></td> </tr> <tr> <td>효촌천</td> <td>1.0</td> <td>0.8</td> <td>-</td> <td>0.2</td> <td>-</td> <td>0.2</td> <td></td> </tr> <tr> <td>덕계천</td> <td>1.8</td> <td>1.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하천명	총연장	기완료	95미발주	95계획			비고	연 장	기시공	미시공	계	28.3	8.4	7.6	12.3	2.0	10.33		신 천	17.3	0.2	7.6	9.5	2.0	7.5		청담천	8.2	5.6	-	2.6	-	2.6		효촌천	1.0	0.8	-	0.2	-	0.2		덕계천	1.8	1.8	-	-	-	-	
하천명	총연장	기완료	95미발주					95계획				비고																																										
				연 장	기시공	미시공																																																
계	28.3	8.4	7.6	12.3	2.0	10.33																																																
신 천	17.3	0.2	7.6	9.5	2.0	7.5																																																
청담천	8.2	5.6	-	2.6	-	2.6																																																
효촌천	1.0	0.8	-	0.2	-	0.2																																																
덕계천	1.8	1.8	-	-	-	-																																																
	○ 위 사업지중 개수사업과 연계처리되고 있는 지역은 덕계천 1.8Km구간을 제외한 3개 하천 미시공구간과 미발주구간 18.2Km로서 개수사업과 연계 추진하다보니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답
췒
내
容

○ 첫췒, 신천 17.3Km구간이 대하여 말씀드려췒습니다.

- 신천구간은 동두천시계에서 은현 선암리, 광적 가납리, 백석 오산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써 미발주 7.6Km구간은 96년도 추진계획이며 95계획 구간 9.5Km중 2.0Km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95계획물량중 신천 7.5Km, 효촌천 0.2Km구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신천개수공사와 연계구간으로써 개수사업비 55억 3천만원(도비)을 확보하여 현재 50%의 용지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으며 하천기본계획상 현하천과 평면선형이 불일치되는 구간은 개수사업을 병행하여야만 차집관로를 매설할 수가 있으므로 건설과에서 개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둘째, 청담천 미시공구간 2.6Km에 대해서는

- 현하천대로 개수사업시행시 하천기본계획대로 사업시행시보다 개수사업비는 물론 용지보상금이 현저히 절감되는 이점을 감안하여 경기도 지방하천 심의위원회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코자 하오며
- 변경즉시 차집관로사업을 시행하여 금년내 사업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郡政質問答辯資料

都市課長 신 대 영 (印)

質問日字		質問議員	이 상 원 의원
質問 内 容 要 約	○ 회천읍 덕정·고암지구 택지개발 사업관련 인근지역 도시기반시설 계획수립 여부		
答 辯 内 容	答辯日字	答辯者 도시과장 신 대 영	
	○ 회천읍 덕정·고암지구의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건설부고시 제373('94. 10. 5)호로 고시되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95. 7.26 택지개발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뢰가 있어 우리군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인근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단지내 개발계획을 검토하고자 '95. 8.17 군청 회의실에서 의원님과 관련실과소장을 모시고 대한주택공사로 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시 설계에 반영되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집약하여 주택공사에 통보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p>답</p>	<p>- 택지개발지구 북쪽에 위치한 지방도 316호선에 대하여는 평화로 우회도로까지 약 600m에 대하여 4차선(25m)으로 확장토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택지개발 완료 후 건축되는 6,200세대 대한 교통량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도로(4차선 : 2km)을</p>
<p>辯</p>	<p>개설하여 평화로 우회도로와 연결하여 택지개발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을 분산 계획토록 하고</p> <p>- 용보아파트 앞에서 택지개발 계획구역(양주 자동차학원)까지 25m도로로 확장 계획을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하였으며</p>
<p>內</p>	<p>-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전철유치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경원선 전철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와 전철 교차방식을 입체처리계획 검토 및 계획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전철역사 설치방안 검토 요구</p>
<p>容</p>	<p>- 지구내 기존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이전대책으로는 단지의 지구내에 취락을 형성하여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지조성과 택지개발 지구내 묘지이장에 대한 부지확보를 요청하였음.</p>
<p>容</p>	<p>○ 위와 같은 사항이 택지개발실시 설계시 반영되도록 우리군에서는 주택공사에 요청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협의요청시 위사항 반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郡 政 質 問 答 辯 資 料

都市課長 申 大 泳 (印)

質問日字	1995. 9.	質問議員	김 영 안 의원
質問 内 容 要 約	<p>○ 그린벨트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당해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일련의 사례와 건의된 내용</p>		
答辯日字	1995. 9.	答 辯 者	도시과장 신 대 영
答 辨 内 容	<p>○ 우리군 개발제한구역은 1971. 7. 30일과 1972. 8. 25일 2차에 걸쳐 군 전체 행정구역면적 303.439 km² 중 26 %에 해당하는 79.02 km²가 주내. 백석. 장흥면 등 3개면 걸쳐 지정 고시되었습니다</p> <p>○ 군에서는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2. 8. 29일 등 4회에 걸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른사람 소유토지상의 주택 이축조건 완화 ② 축사의 규모와 소놀이터등 토지형질변경 면적 확대 ③ 농업용 창고와 부속사의 설치 규모 확대 ④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는 자의 자녀 분가용 주택 신축허용 ⑤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기준 완화 ⑥ 유원지내 가설건물 (야외점포) 설치허용 ⑦ 개인이 설치하는 체력단련 및 운동시설 설치허용 		

답

- ⑧ 개발제한구역내 주차장 설치허용
- ⑨ 면사무소 소재지와 나환자 정착촌 등의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 ⑩ 기존 축사용건물의 창고 및 정미소, 수리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 ⑪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 관상수 식재시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의 분류
- ⑫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 정정시 면에서 처리하고 군에는 결과 보고만 하므로 대장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요구 등

辨

주민불편사항을 파악 경기도 및 경기도북부출장소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제도 개선 건의한 바 1993. 12. 31일 주택 중.개축규모의 확대와 이축규제 완화 등 일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내용이 확정되어 1994. 1.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內

- 1993. 12. 31일 확정된 제도개선내용에 대한 주민 홍보교육시 제도개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불편사항

- ① 장흥면 삼하리 등 2개리 2.72 km²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은 일부 완화되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생업관련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容

- ②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정미소의 이축허용
- ③ 개발제한구역내 자녀 분가용 주택 신축허용 등에 대하여 1994. 2. 7일 경기도 및 경기도북부출장소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1994. 9. 24일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중.개축의 규모가 확대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1995. 3. 14일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정미소의 이축허용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규제가 일부 완화 되었습니다

- 또한 1995. 9. 13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등 제도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자 제도개선사항을 파악하도록 해당읍.면에 통보한 바 있으며 구역내 주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도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郡政 質 問 答 辯 資 料

都市課長 신대영 (印)

質問日字		質問議員	김영안 의원																																									
質問 內容 要 略	<p>○ 북한산 국립공원 편입지역중 기존 상가지역인 송추계곡과 39번 국도변등에 위치한 전.답은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관련부서의 견해는</p>																																											
	答辯日字	答辯者	도시과장 신대영																																									
答 辯 內 容	<p>○ 북한산 국립공원 현황</p> <p> . 공원구역 면적 : 78.450Km²</p> <p> . 용도지구 계획</p> <table style="margin-lef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자연보전지구</td> <td style="padding-left: 20px;">8.853Km²</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자연환경지구</td> <td style="padding-left: 20px;">66.494Km²</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취락지구</td> <td style="padding-left: 20px;">0.919Km²</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집단시설지구</td> <td style="padding-left: 20px;">2.184Km²</td> </tr> </table> <p> . 송추집단시설지구 계획(500,000m²)</p> <table style="margin-lef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left: 10px;">- 공공시설지</td> <td style="padding-left: 20px;">22,330m²</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 녹지</td> <td style="padding-left: 20px;">207,620m²</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 유보지</td> <td style="padding-left: 20px;">23,960m²</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 기타시설지</td> <td style="padding-left: 20px;">239,590m²</td>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left: 10px;">도</td> <td style="padding-left: 10px;">로</td> <td style="padding-left: 20px;">: 31,57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하</td> <td style="padding-left: 10px;">천</td> <td style="padding-left: 20px;">: 28,77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주</td> <td style="padding-left: 10px;">차</td> <td style="padding-left: 20px;">장 : 52,89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조</td> <td style="padding-left: 10px;">경</td> <td style="padding-left: 20px;">휴게지 : 28,14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놀</td> <td style="padding-left: 10px;">이</td> <td style="padding-left: 20px;">시설 : 69,45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체</td> <td style="padding-left: 10px;">육</td> <td style="padding-left: 20px;">시설지 : 26,97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종</td> <td style="padding-left: 10px;">교</td> <td style="padding-left: 20px;">용지 : 1,800m²</td> </tr> </table> </td> </tr> </table>			자연보전지구	8.853Km ²	자연환경지구	66.494Km ²	취락지구	0.919Km ²	집단시설지구	2.184Km ²	- 공공시설지	22,330m ²		- 녹지	207,620m ²		- 유보지	23,960m ²		- 기타시설지	239,590m ²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left: 10px;">도</td> <td style="padding-left: 10px;">로</td> <td style="padding-left: 20px;">: 31,57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하</td> <td style="padding-left: 10px;">천</td> <td style="padding-left: 20px;">: 28,77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주</td> <td style="padding-left: 10px;">차</td> <td style="padding-left: 20px;">장 : 52,89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조</td> <td style="padding-left: 10px;">경</td> <td style="padding-left: 20px;">휴게지 : 28,14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놀</td> <td style="padding-left: 10px;">이</td> <td style="padding-left: 20px;">시설 : 69,45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체</td> <td style="padding-left: 10px;">육</td> <td style="padding-left: 20px;">시설지 : 26,97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종</td> <td style="padding-left: 10px;">교</td> <td style="padding-left: 20px;">용지 : 1,800m²</td> </tr> </table>	도	로	: 31,570m ²	하	천	: 28,770m ²	주	차	장 : 52,890m ²	조	경	휴게지 : 28,140m ²	놀	이	시설 : 69,450m ²	체	육	시설지 : 26,970m ²	종	교	용지 : 1,800m ²
자연보전지구	8.853Km ²																																											
자연환경지구	66.494Km ²																																											
취락지구	0.919Km ²																																											
집단시설지구	2.184Km ²																																											
- 공공시설지	22,330m ²																																											
- 녹지	207,620m ²																																											
- 유보지	23,960m ²																																											
- 기타시설지	239,590m ²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left: 10px;">도</td> <td style="padding-left: 10px;">로</td> <td style="padding-left: 20px;">: 31,57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하</td> <td style="padding-left: 10px;">천</td> <td style="padding-left: 20px;">: 28,77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주</td> <td style="padding-left: 10px;">차</td> <td style="padding-left: 20px;">장 : 52,89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조</td> <td style="padding-left: 10px;">경</td> <td style="padding-left: 20px;">휴게지 : 28,14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놀</td> <td style="padding-left: 10px;">이</td> <td style="padding-left: 20px;">시설 : 69,45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체</td> <td style="padding-left: 10px;">육</td> <td style="padding-left: 20px;">시설지 : 26,970m²</td> </tr> <tr> <td style="padding-left: 10px;">종</td> <td style="padding-left: 10px;">교</td> <td style="padding-left: 20px;">용지 : 1,800m²</td> </tr> </table>	도	로	: 31,570m ²	하	천	: 28,770m ²	주	차	장 : 52,890m ²	조	경	휴게지 : 28,140m ²	놀	이	시설 : 69,450m ²	체	육	시설지 : 26,970m ²	종	교	용지 : 1,800m ²																					
도	로	: 31,570m ²																																										
하	천	: 28,770m ²																																										
주	차	장 : 52,890m ²																																										
조	경	휴게지 : 28,140m ²																																										
놀	이	시설 : 69,450m ²																																										
체	육	시설지 : 26,970m ²																																										
종	교	용지 : 1,800m ²																																										

○ 공원추진연혁

- 71년 이전 :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 유원지로 개발운영
- 71. 2. 30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건설부)
- 83. 4. 4 : 북한산 국립공원 지정 (건설부)
- 85. 4. 26 : 북한한 국립공원계획 결정고시
- 86.7 ~ 95.4 : 송추집단지설지구 계획변경결정

○ 관련부서의 견해

답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경관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공원으로서

辯

-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은 군사상 및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 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을 사용할 수 없거나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內

- 우리군에서는 공원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많음을 감안,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코자 하며

容

- 의원님의 질의요지인 송추계곡 및 39번 국도변 전.답의 공원폐지론 역시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공원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郡政質問答辯資料

都市課長 **신대영** (印)

質問日字		質問議員	김영안 의원
質問 内容 要約	<input type="checkbox"/> 장흥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추진 계획		
答 辯 内 容	答辯日字	答辯者	
答 辯 内 容	<p>二 현 황</p> <p>○ 장흥면 지역은 국민관광지를 비롯한 다수의 위락시설과 그에 따른 관광인구의 유입과 생활 환경변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충분한 급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공사시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사업개요</p> <p>○ 장흥면지역은 송추,일영,석현지역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시설용량 4천톤(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 공사)을 공급코저하며 이를 위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p>		

郡政 質 問 答 辯 資 料

都市課長 신대영 (印)

質問日字		質問議員	김영안 의원				
質問 內容 要 略	○ 장흥면 일영리 취락지구 지정 추진계획						
	答辯日字	答辯者 도시과장 신대영					
答 辯 內 容	<p>○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장흥면 일영리 일원 - 면 적 : 419,000 m² - 용도지역 <table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margin-left: 20px;">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width: 10px; height: 15px;"></td> <td style="padding-left: 5px;">농림 지역 : 75,000m²</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width: 10px; height: 15px;"></td> <td style="padding-left: 5px;">준농림지역 : 344,000m²</td> </tr> </table> <p>○ 추진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 1. 9 : 최초 경기도에 변경요청 - 93. 9.10 : 경기도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완반복중 도면을 1:5,000도로 재작성요구 반려 - 94. 5. 9 : 보완 재신청 - 94. 5. 9 : 경기도에서 재반려 <p>※ 반려사유 : 경기도에서-서울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결과 취락지구로 할 경우 본사업지구 하류 2.8Km지점에 위치한 고양상수원 보호구역이 위치하여 수질오염악화우려로 부동의 처리됨</p>				농림 지역 : 75,000m ²		준농림지역 : 344,000m ²
	농림 지역 : 75,000m ²						
	준농림지역 : 344,000m ²						

○ 향후계획

- 서울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본 사업지구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고양시 상수원의 오염우려가 완전 해소되기전에는 동의불응하는 사안으로
- 우리군에서는 장래 건설예정인 장흥 국민관광지내 하수종말처리장에 취락지구 개발에 따른 오.폐수를 유입.처리하여, 고양시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 경기도 및 건설부의 승인을 득하고자 계획하였으나
-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용 소요예산액 200억 확보가 지난하고
-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에서의 각종행위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취락지구로 지정시 오히려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리라 사료되어 취락지구 지정계획을 중지한 상태임

답
변
내
容